

사천시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의안번호 제34호 2003. 11. 4)

총 무 위 원 회
2003. 11. 5 (수)

1. 심사경과

- 가. 2003. 10. 23 : 사천시장 제출
- 나. 2003. 10. 23 : 총무위원회 회부
- 다. 2003. 11. 4 : 사천시의회 제80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요지(환경보호과장 이양호)

가. 개정이유

- (1) 주민지원사업비의 배분기준 중 순수사업비 등 용어의 개념이 불분명하여 이를 명료히 함으로서 업무의 혼선을 방지코자 함.
- (2)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동일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여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1) “주민지원사업비중 직접지원사업비는 순수사업비 총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안 제8조)
- (2) “시장은 상수원관리지역의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우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여 온 자로서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 기타 시설물을 소유한자 한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및 “직접지원사업 지원대상은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 안에 거주하는 자를 우선 지원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차적으로 수변구역 안 제외지역(자연마을 등)에 거주하는 자로 확대 지원할 수 있다.” 조항 삭제(제10조)

3. 검토보고요지(전문위원 박명돈)

- 개정조례안은 낙동강 수계 주민지원 사업비의 배분 기준 중 순수 사업비 등 용

어의 개념이 불분명하여 해당 조항 삭제와,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어 조례로 규정할 필요가 없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법적인 문제는 없고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 없음